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동일제강 주식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' 19. 9. 16(월)]에 따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[' 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 19. 8. 21(수)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' 19. 9. 11(수)] 오전 11시 까지 한국 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' 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2019년 8월 9일

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474-40

동일제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익중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